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9.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2.27.)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양어장·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수산물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나 축사·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그러나 양식장과 같은 수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신고(농업진흥지역 외)를 하거나 농지전용 허가(농업진흥지역 내)를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개정안은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내수면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뱀장어, 송어 등 내수면 양식장은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총 2,714개소가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농지 전용의 예외사유에 ‘수산물 생산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수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사실상 농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농업 경영에 이용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농지의 범위를 수산업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즉, 현행 「대한민국 헌법」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과 수산업은 서로 다른 업종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종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도 농업과 어업을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었음.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나 축사·곤충사육사장 등은 모두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생산과 관계된 시설로서 수산물 생산시설과는 차이가 있음.

둘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과 ‘양어장’의 지목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